학생생활에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본 대학교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정신을 함양시키고 연학, 노력, 봉사의 학훈 아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내·외에서의 학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의 학내·외 생활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학 생 증

제3조 (발급) ①신입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휴대) ①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필요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강의실, 실험실, 도서열람실 등에 출입할 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③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변조할 수 없다.

제5조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이하 "학생복지팀"이라 한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제6조 (반납) 졸업, 휴학, 퇴학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증을 학생복지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9.8.1.,2012.8.1.)

제 3 장 학생회 활동

제7조 (학생회 조직)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지도) 학생회의 활동은 학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건전하게 활동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제9조 (학생회임원의 승인) ①본 대학교의 학생회임원으로 선임된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②학생회임원의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학생자치단체(동아리) 활동

제10조 (학생자치단체의 조직) 학생자치단체(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조직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 (설립목적)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이외의 동아리를 조직할 수 없다.

1. 종교(기독교) 및 봉사의 목적
2. 학술연구활동
3. 예술・체육・취미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활동

제12조 (설립요건) 동아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활동목적이 전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20명이상의 학생구성원을 확보할 것(개정 2016.9.26.)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3조 (등록절차)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8.1.,2003.4.1)

1. 학생동아리 등록신청서
2. 동아리회칙
3. 회원명단
4. 동아리 입회신청서
5. 연간 행사계획서
6. 전학년도 행사 실적(단, 등록갱신의 경우에 한함)
7.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8. 동아리대표자 서약서

제14조 (등록승인)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업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제15조 (등록갱신 및 가승인) ①동아리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②계속적인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아리의 전학년도 행사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경우 동아리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신규 동아리는 가승인하에 활동하게 한다.

제16조 (변경등록 및 평가) ①동아리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모든 동아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아리 종합평가서에 의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승인자료로 활용한다.

③전항의 동아리 종합평가서는 학생복지팀, 지도교수, 동아리연합회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비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개정 '99.8.1.,2012.8.1.)

1. 학생지원팀 : 40%
2. 지도교수 : 20%
3. 동아리연합회 : 40%

제17조 (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받은 조교수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8.1.)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이상의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③지도교수는 당해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④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지도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를 취업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제18조 (해산명령) ①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의 임원 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26.)

1. 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된 경우
2. 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활동이 극히 부진한 경우
4.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이를 위해 주류를 교내에 반입, 취급한 경우

②전항의 경우 총장은 당해 동아리와 관련된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 (동아리의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본 대학교의 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동아리의 집회 및 활동은 학교수업과 중복될 수 없다.

③동아리의 야간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④학생의 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유흥업소는 집회장소로 허가하지 않는다.

⑤동아리의 이름으로 교외에서 타학교와의 연합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본 대학교 동아리가 주관하는 교외행사 또는 외부와의 연합으로 하는 교내행사는 행사 10일전에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학생의 교내·외 활동

제20조 (집회) ①학생 또는 동아리가 다음의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10인 이상의 교내집회
2. 20인 이상의 교외집회
3.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②전항의 허가신청은 학생복지팀에 비치된 소정양식으로 하여야 하며, 행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2012.8.1.)
③제1항의 허가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총장은 즉시 이의 허가를 취소한다.
⑤학생 및 동아리의 장은 모든 집회 및 행사의 종료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게시물) ①동아리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팀에 사전검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8.1.,2012.8.1.)
②모든 게시물은 단체의 명의로만 게시가 가능하며, 불법단체 및 개인의 명의로 된 게시물은 일체 게시할 수 없다.
③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전3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즉시 제거한다.

제22조 (간행물) ①동아리가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②총장은 전항의 발행승인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간행물편집에 관한 일

체의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간행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 (학생복지시설) ①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의 수행을 위해 복지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학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4조 (교외활동) ①학생 및 동아리가 교외행사에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 10일전까지 별제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제출을 통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6.)
②학생 및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 없이 교외에서 불건전한 단체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6.1.16.)
③학생 및 동아리의 국외활동은 방학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견학 및 졸업여행등 국외활동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대상학생 중 50%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고, 출국 20일전까지 관련부서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인터쉽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6.1.16. 개정 2006.11.6.,2012.8.1.)
1. 국외활동에 참석하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은 관련 보험 등에 가입한 후 관련서류 일체를 행사개시 7일 전까지는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5조 (포상의 종류) 학칙 제41조에 의거 이사장 또는 총장은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1. 성적우수상
2. 선행상(모범상)
3. 공로상
4. 노력상
5. 기타

제26조 (징계의 종류) 학칙 제42조에 의거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제27조 (상벌의 심의) 학생에 대한 상벌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의 대상) 제24조의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상은 최고학년의 학생중 학과 내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2. 선행상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3. 공로상은 교내·외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
4. 노력상은 교내·외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기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 대학교를 명예롭게 한 자

제29조 (근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5일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중에는 수강시키며 특별지도를 한다.

1. 용의, 복장이 지나치게 불량한 자
2. 학습태도 또는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3. 관계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자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거나 흡연태도가 불손한 자
5. 음주를 하고 수업에 임한 자
6.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7.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제30조 (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정지를 명하고 5일이상 14일이내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학교 당국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자
2. 흉기(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소지, 보관한 자
3. 타인을 협박 또는 폭행한 자

4.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이를 위해 주류를 교내에 반입, 취급한 자
5. 허가없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배부한 자
6. 2회이상 근신처분을 받은 자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8.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이를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9. 교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자
10.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제31조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정지를 명하고 15일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또는 상해를 입힌 자
2. 총장의 허가 없이 집회하거나 단체에 참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집단폭행 또는 편싸움을 선동했거나 이에 가담한 자
4.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고사 등의 행위에 참여한 자
5.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6. 학교건물이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7. 고의로 강의를 방해한 자
8. 2회이상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자
9.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제32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4. 징계중인 자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자
5. 2회이상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자
6. 고사 등의 일을 주도하여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7. 학교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8.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9.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여 수업을 방해한 자
10. 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제작, 게시, 살포한 자
11. 본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여 학사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 자

12.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제33조 (징계의 내용) ①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대학 당국의 승인을 얻은 지위 또는 특전을 상실케 하고 학생회에서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어떠한 사건이든 미연에 방지·수습되는 경우에는 진상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③전4조에 의하여 징계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절차) ①취업복지처장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1. 사건 경위서
2. 본인 진술서
3. 지도교수 의견서

②전항의 학생지도위원회에는 관련 학생의 지도교수가 참석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할 수 있다.
③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학생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보충규정) 학생의 상벌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학생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생준칙 또는 그 개별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